

* 본 안내서는 환경부 수탁과제로 2016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수행한 「한·중 환경 협력 확대를 위한 중국 환경관리 정책 및 체계 분석 연구」의 별쇄본(別刷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차 / 례 /

1. 중국 현황개괄	1
2. 중국의 주요 권력기관 및 정책결정 시스템	2
3. 중국 환경정책 담당기관 및 업무체계	3
4. 대중국 협력의 KEY WORD	8
부록 I. 중국 국제환경협력 담당기관 연락처	13
부록 II. 중국의 주요 환경법규 및 환경계획	14
부록 III. 한중 환경협력 현황	22

2. 중국의 주요 권력기관 및 정책결정 시스템

가. 주요 권력기관

- 중국 「헌법」에서 규정하는 중국 최고 권력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이나 실질적인 최고 권력기관은 ‘공산당’이며 그 중에서도 ‘당 중앙위원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임
 - 「헌법」과 공산당 당장에 공산당이 국가에 대한 “영도적” 지위를 가짐을 명시,
공산당이 행정·입법·사법 기관에 대해 절대적 권력을 가짐
 - 전국인민대표대회는 5년에 한 번씩 개최되며, 「헌법」 및 기본법의 제·개정, 국
가 주석과 부주석, 국무원 총리, 최고인민법원장 등 주요 기관의 지도자의 선
출기능을 담당
 -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내용
 - 1차~2차 회의: 당 및 중앙부서의 주요 인사 선출
 - 3차 회의: 국가발전 및 경제건설 방향 수립
 - 4차 회의: 공산당의 주요 의제 결정
 - 5차 회의: 국가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논의
 - 6차 회의: 4, 5차 회의에 이어 당과 국가경제 관련 주요 사항 논의
 - 7차 회의: 차기 당대회의 준비사항 논의
- 국무원은 국가 최고 행정기관이자 중앙 인민정부임
 - 국무원은 전인대에 의해 구성되고 전인대의 감독을 받지만, 실제 정치과정에서
는 공산당의 노선과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상호 보완관계에 있음. 공산당
중앙정치국에서 국무원의 지도자가 전인대의 최고 지도자보다 높은 지위를 가
지기 때문에 국무원의 지위를 전인대보다 높게 보기도 함

나. 정책결정 시스템

- 당 중앙위원회가 정책의 이념과 목표, 전략과 방침을 수립하면, 이를 전인대와 국무원 및 관련 위원회가 법률법규와 정책으로 구체화 함
- 환경정책도 마찬가지로 당 중앙위가 전략과 방침을 수립하면 전인대 환경자원보호위원회가 환경관련 정책안을 연구 및 심의, 입안함. 국무원 및 국가환경보호부는 당의 정책방향과 전인대가 제정한 법률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행함
- 국가환경보호부는 환경보호 정책과 법규를 입안하고 법규와 정책을 집행하며 전국 환경보호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함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법률 및 정책을 수행하는 집행자로, 「환경보호법」에서 지방정부의 환경보호 책임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과 의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고, 지방의 환경보호부처는 지방인민정부에 수직관리되기 때문에 국가환경보호부보다는 지방인민정부의 환경정책 실현의지가 지방 환경보호부의 업무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침

3. 중국 환경정책 담당기관 및 업무체제

가. 중국 환경 법과 제도

- 중국 환경보호 관련 행정은 1973년 「환경보호와 개선에 관한 약간의 규정」의 수립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음. 발전-확대-강화단계를 거쳐 현재 「환경보호법」을 비롯하여 총 12개 환경관련 법률과 34개 행정법규를 두고있음

- 2013년 이후 중국은 기존의 환경 법규의 개정과 조례, 규범 등의 제정을 통해 환경오염에 대한 관리감독 및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음
 - 2013년 9월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2014년 「환경보호법」을 개정하였으며 2015년에는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과 「대기오염방지법」을 제·개정하였음
- 「환경보호법」은 1989년 제정되었으며, 지난 2014년 25여만에 개정됨. 개정을 통해 정부와 기업, 민간의 환경오염 관리 및 대응 수준을 대폭 강화함
 - 오염물질 불법배출 기업은 일일 누진제 벌금부과를 포함하여 생산제한 및 사업장 폐쇄 등의 조치를 받게 되며, 기업의 돌발환경사고 대응을 위한 매뉴얼 작성 및 환경오염책임보호가입이 요구됨
 - 정부에 대해서는 환경보호 목표책임제와 인사고과평가제도 시행을 통해 상급정부의 하급 정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
- 「환경보호법」에 이어 2015년 「대기오염방지법」이 개정되었으며 기존 66개 조항에서 129개 조항으로 증가하였고, 중점지역 대기오염 공동방지와 심각한 오염날씨 대응 관련 규정이 새롭게 추가됨
 - 대기질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방지 및 관리를 위한 지역간 협력을 강조
 - 대기오염 유발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대기오염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벌금 상한성을 폐지함
- 최근 발표된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에서는 ‘녹색발전’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환경보호 목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음
 - 주목할 부분은 환경보호 목표지표에 있어 도시 대기질 양호 일수 목표 지표와 PM_{2.5} 목표 지표가 이번 5개년 계획에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그 밖의 환경보호 목표지표가 모두 강제성을 갖는 구속성 지표로 제시됨

나. 중국 국내 환경정책 담당기관

- 「환경보호법」에 따르면, 국무원 환경보호부가 전국 환경보호 업무에 대한 감독관리 권한을 갖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농업부, 국가임업총국, 국토자원부, 수리부 등으로 환경관리에 관한 중요 권한과 기능이 분산되어 있음
 - 에너지 관리, 산업구조 조정 및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업무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농촌과 농업환경 및 생태보호는 농업부가, 산림 및 자연보호는 국가임업총국과 국토자원부가, 수리자원 개발 및 관리는 수리부가 담당함
- 환경보호부는 국무원 직속기관으로서 국가 환경보호 법률법규, 정책의 집행과 전국 환경보호 및 관리감독, 환경오염방지, 자연생태보호, 환경질 개선의 임무를 가짐
 - 1개 청(廳), 1개 처(處), 12개 사(司), 1개 국(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개 직속 산하기구를 가짐
 - 환경보호부 본부는 판공청, 기획재무사, 정책법규사, 행정체제와 인사처, 과학기술기준사, 오염물배출총량규제사, 환경영향평가사, 환경모니터링사, 오염방지사, 자연생태보호사, 핵안전관리사, 환경감찰국, 국제협력사, 홍보교육사로 구성

<표 1> 중국 환경보호부와 실·국 업무 및 한국 환경부 유사업무 담당 실·국 대응표

중국 환경보호부		한국 환경부
실·국명	주요 담당 업무	유사업무 담당 실·국명
판공청 (办公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의 일상업무에 대한 협조 및 감독 조사 역할 수행 하위부서: 총직반실(보위처), 장관판공청(비서업무), 종합처, 기록처, 정보화판공실, 연구실, 정부감사실, 민원판공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변인,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정보화담당관/비상안전담당관
기획재무사 (规划财务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기능지역, 환경보호계획, 투자 및 경비예결산, 재무, 국유자산 관리 등에 대한 부처 규장, 제도 수립 및 집행사항 감독관리 하위부서: 종합처, 기획처, 예산처, 투자처, 재무처, 내부회계감사관공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환경정책실 환경정책관
정책법규사 (政策法规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보호 관련 법률, 행정법규, 경제정책 등 기초제도 수립 하위부서: 종합처, 법규처, 환경정책처, 행정심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담당관
행정체제와 인사사 (行政体制与人事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보호부 간부, 인력배양 및 행정체제 개혁 등 담당 하위부서: 종합처, 행정체제개혁처, 간부1처, 간부2처, 인력자원처, 간부감독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
과학기술기준사 (科技标准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보호 과학기술 정책, 기획, 계획 수립 하위부서: 종합처, 환경과학기술발전처, 환경기준관리처, 환경기술지도처, 환경건강관리처(기후변화대응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정책실 환경정책관/환경보건정책관/기후대기정책관
오염물배출총량규제사 (污染物排放总量控制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오염물질 배출감축 목표 책임 부처: 총량규제, 배출허가증 및 환경통계 정책, 행정법규, 부처규장, 제도와 규범 등 제정 및 실시 감독 하위부서: 종합처, 수질오염물총량규제처, 대기오염물총량규제처, 통계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정책실
환경영향평가사 (环境影响评价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영향평가정책, 법률, 행정법규, 부처규장 수립 및 실시 하위부서: 종합처, 기획환경영향평가처, 건설항목환경영향평가1처, 건설항목환경영향평가2처, 건설항목환경영향평가3처, 건설항목환경보호회검수관리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보전국
환경모니터링사 (环境监测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모니터링, 환경질, 생태환경 등 환경정보 발표, 관련 정책 수립 하위부서: 종합처, 환경질모니터링처, 오염원모니터링처, 모니터링질관리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정책실 환경정책관, 한국환경공단(환경부 산하기관)
오염방지사 (污染防治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오염방지 감독관리 및 환경추이 분석 물, 대기, 토지, 소음, 빛, 악취, 폐기물, 화학물질, 자동차 오염방지 정책 등 수립 하위부서: 종합처, 음용수 수원지 환경보호처, 대기 및 소음오염방지처, 중점유역 수질오염방지처, 해양오염방지처, 폐기물관리처, 화학물질관리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자원순환국
자연생태보호사 (自然生态保护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태보호업무 지도 조정 및 관리감독, 생태보호 관련 정책, 기획, 법규, 기준 등 수립, 국가급자연보호구 건설계획 수립 부서: 종합처, 생태기능보호처, 자연보호구관리처, 생물다양성보호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보전국
핵안전관리사 (核安全管理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안전, 방사능안전, 핵안전사고 응급대응 등 관련 정책, 법률 등 수립 하위부서: 종합처, 원자력1처~3처, 원자로처, 핵연료 운송처, 방사성폐기물관리처, 핵안전설비처, 핵기술이용처, 전자복사 및 채광처, 복사모니터링 및 응급대응처, 핵안전인원자질관리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표 1〉의 계속

중국 환경보호부		한국 환경부
실·국명	주요 담당 업무	유사업무 담당 실·국명
환경감찰국 (环境监察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호 관련 정책, 계획, 법규 등 집행사항 감찰 ▪ 하위부서: 판공실, 배출부가금관리처, 감찰조사처, 지역감찰처, 행정집행처별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관
국제협력사 (国际合作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환경협력 창구, 국제협력 정책 및 법규 수립 및 집행 ▪ 하위부서: 종합처, 국제 기구 및 조약처, 아시아주처, 유럽주처, 미주대양주처, 핵안전국제협력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홍보교육사 (宣传教育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호 홍보교육 업무 지도 조정, 환경보호 홍보교육 관련 정책, 계획, 법규 제정 및 실시 ▪ 하위부서: 종합처, 언론처, 홍보교육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변인

주: 중국 환경보호부 산하기관 중국 공산당 당위원회 및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파견 기율감찰팀은 제외함

다. 중국 국제환경협력 담당조직 및 업무체계

- 환경보호부내에서 국제협력기능은 국제협력사에서 담당하며, 산하기구로는 환경보호대외협력센터, 중-아세안 환경보호협력센터, 중일우호환경보호센터가 있음
- 국제협력사는 국제환경협력 관련 정책, 부처 규장, 제도의 수립 및 감독, 국제환경조약 이행 및 협상 업무 수행, 양자 및 다자간 환경보호 협력 업무, 정부간 환경협력 계획, 협력협의, MoU 체결 업무를 수행하며, 종합처(處), 국제 기구 및 조약처, 아시아주처, 유럽주처, 미주대양주처, 핵안전국제협력처로 구성됨
- 환경보호대외협력센터는 1989년 설립된 기구로 환경보호분야에서의 국제금융 기구의 자금, 프로젝트 이행 자금, 양자간 원조 자금의 이용 및 기타 대외환경 협력 사무관리 업무를 수행
- 중-아세안환경보호협력센터는 중-아세안 환경보호협력을 중심으로 역내 환경보호 국제협력을 추진
- 중일우호환경보호센터는 1996년 설립되었으며 중일간 환경기초협력 및 국제교류 창구역할을 수행

4. 대중국 협력의 KEY WORD

가. 시진핑시대

- 시진핑 시대는 시진핑과 리커창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제 5세대 지도부가 이끄는 시대를 일컬으며, 시진핑 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중국몽(夢)’, ‘신창타이(新常態)’, ‘전면적 개혁과 부패청산’ 등임.
- ‘중국몽(夢)’은 2013년 시진핑 시대가 시작되면서 내건 2020년까지 중국 국민들의 의식주가 해결되고 중산층 수준의 사회인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와 부강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룩하자는 정치적 슬로건임. 즉, 시진핑 시대에 ‘부강한 국가, 부흥한 민족, 행복한 국민’을 이룩하려는 중국 지도부의 국가발전 전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신창타이(新常態)’는 뉴노멀(New Normal)¹⁾의 중국식 표현이자 해석임. 중국 지도부 가운데 2014년 5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 언급했으며, 12월 중국 공산당 중앙경제정책회의에서 중국의 경제가 고속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의 시대로 진입했으며, 양적 성장규모나 속도보다 성장의 질과 효율을 추구해야 하는 소위 ‘신창타이(新常態)’ 단계에 들어갔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함. 즉 ‘신창타이(新常態)’는 개방 이후 연평균 10%에 가까운 급속한 경제성장을 했던 3~4세대 시기와는 다르게 경제성장 속도가 크게 둔화된 시진핑 시대의 중국경제 현상과 특징을 보여주는 개념임

1) 뉴노멀(New Normal)은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또는 표준’을 가리키는 말로서 일반적으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부상한 저성장, 저소비, 높은 실업률, 고위험, 규제강화, 미국 경제 역할 축소 등 새로운 경제 질서를 의미한다. 박문각. 2015. 「핵심시사용어」 Vol.1. p.49. ([https://books.google.co.kr/books?id=Uhl2CQAAQBAJ&pg=PA49&dq=%EB%89%B4%EB%85%B8%EB%A9%80\(New+Normal\)++%EC%8B%A0%EC%B0%BD%ED%83%80%EC%9D%B4\(%E6%96%B0%E5%B8%B8%E6%85%8B\)&hl=ko&sa=X&ved=0ahUKEWiHxcLljaLNAhXLlJQKHYYCjAuEQ6AEIHzAC#v=onepage&q=%EB%89%B4%EB%85%B8%EB%A9%80\(New%20Normal\)%20%20%EC%8B%A0%EC%B0%BD%ED%83%80%EC%9D%B4\(%E6%96%B0%E5%B8%B8%E6%85%8B\)&f=false](https://books.google.co.kr/books?id=Uhl2CQAAQBAJ&pg=PA49&dq=%EB%89%B4%EB%85%B8%EB%A9%80(New+Normal)++%EC%8B%A0%EC%B0%BD%ED%83%80%EC%9D%B4(%E6%96%B0%E5%B8%B8%E6%85%8B)&hl=ko&sa=X&ved=0ahUKEWiHxcLljaLNAhXLlJQKHYYCjAuEQ6AEIHzAC#v=onepage&q=%EB%89%B4%EB%85%B8%EB%A9%80(New%20Normal)%20%20%EC%8B%A0%EC%B0%BD%ED%83%80%EC%9D%B4(%E6%96%B0%E5%B8%B8%E6%85%8B)&f=false)[2016. 3.3])

- ‘전면적 개혁과 부패청산’은 시진핑 시대의 전체적인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개념임. 시진핑 시대에 중국 지도부는 개혁개방 정책 추진 이후 30여 년간 급속한 압축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경제, 정치, 사회 각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개혁조치를 취하고 있음. 이러한 개혁조치는 개혁을 통해 창출되는 자원과 기회를 이용하여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성장을 추진하려는 ‘신창타이(新常態)’ 경제질서에 조용한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보임. 전면적인 부패청산 조치는 개혁조치와 동전의 양면에 해당되는 정책방향임. 시진핑 시대에 대대적인 부패청산 조치는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 또는 제어하고 사회전반에 걸친 질서를 확립하여 개혁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갖고 있음.

○ 환경분야와 관련된 시진핑 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생태문명의 건설’을 들 수 있음.

- ‘생태문명 건설’은 중국공산당 제18차 대회에서 당헌개정을 통해 환경보호를 위한 ‘생태문명의 건설’을 중국공산당의 국정목표의 하나로 채택하였음. ‘생태문명의 건설’은 단지 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에너지 및 자원 이용, 국토개발 등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국 특유의 전략적 목표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생태문명’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환경보전 각종 조치와 사업은 중국 공산당의 ‘생태문명 건설’을 위한 것으로, 중앙정부의 지지와 지원 아래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시진핑 시대의 핵심 키워드에 대한 이해는 정부, 공공부문 및 민간 등 각 영역에서 중국과의 협력 시 반드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임.

나. 공공과 민간

○ 중국 사회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공공과 민간이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임.

- 사회주의체제가 점진적으로 시장화 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 공공시스템이 민간으로 이양되거나 민영화 되었지만 에너지, 철강 등 주요 산업은 여전히 국유기업 등 공기업으로 남아 있으며, 민간기업도 기존의 사회주의 잔영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부문이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주요 산업부문에서 국유기업 등 공기업이 상당부분을 점하고 있으며, 민간기업도 공공부문이 갖고 있는 권한의 지원과 관계를 바탕으로 시장화 및 민영화가 이루어지면서 중국 특유의 강력한 공공부문과 민간영역의 결합관계와 상호의존관계가 형성됨. 중국 민간기업의 상당수는 당초 국유기업에서 민영화 됐거나 공공부문의 일부가 독립하여 설립되면서 인적 네트워크 측면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음
- 환경분야의 사업과 시장은 주로 정부의 환경기준, 인허가 절차, 배출부가금 도입 등 정책적 드라이브에 의해 창출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공공부문과 민간영역의 결합과 상호의존 관계와 인적 네트워크가 밀접하게 형성되어 있음.
- 특히 지방정부와 산업부문의 중앙 정부부처가 주요 정책과 사업을 집행하는 중국의 환경정책 집행구조에서 중국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산업부문 등 공공부문과 민간영역에서 이러한 중국의 특성이 보다 극명하게 나타남.
 - 따라서 중국 기업과의 사업 시 국유기업 등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공공부문과의 적절한 지원과 협력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함.

다. 신뢰와 상호이익(相互利益)

- 중국에서 신뢰와 상호이익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존재로, 중국인과의 신뢰를 형성할 때는 반드시 상호이익을 고려해야 함.

- 개인과 개인, 기관과 기관, 정부와 정부간의 사업관계에서 신뢰는 다른 나라와 경우와 마찬가지로 능력, 약속이행 및 장시간에 걸친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형성됨.
- 이와 함께 신뢰는 상호이익, 즉 이익의 공유와 분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즉 상호이익이라는 결과물에 기초하여 신뢰관계가 형성되며, 이렇게 형성된 신뢰는 상호이익을 배가하는 작용을 함.
- 환경분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의 사업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경쟁자를 상대해야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기술, 장비, 경험, 기법 등에서 경쟁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함. 이와 동시에 협력으로 생기는 이익이 일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쌍방에 있다는 점에 신뢰를 갖도록 해야 함.
- 필요 시, 상호간 이익이 생길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만들고 중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미세먼지 등 중국의 환경측정 데이터 공유사업에서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예·경보 정확도 향상이라는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중국은 우리나라의 데이터 공유만으로는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측정기술 전수 등 중국이 데이터 공유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제시하여 상호간 신뢰형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라. 상세계획(디테일(Detail))

- 중국과의 사업과정에서 기업, 기관 및 정부는 통상적으로 MOU 또는 합의서를 체결하는데, 이러한 문서는 개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임.
- 실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이행계획을 담은 또 다른 합의서가 필요함.

- 중국과의 사업에서 ‘악마는 디테일(Detail)에 있다’는 말처럼 상세한 이행계획에 대한 합의는 일반적인 MOU 체결보다도 어렵고 협상과정에서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상세계획은 대부분 우리측에서 제시하기 때문에 중국의 계획과 의중을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여건, 주요 관심사 및 의중을 사전에 파악하여 상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마. 판시(關係)

- 중국과의 사업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회자되는 단어가 소위 ‘판시’로, 실제로 ‘판시’는 중국과의 사업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중요한 역할을 함
 - “‘판시’ 없이는 중국과의 사업이 어렵다” 등의 말을 할 때 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판시’임.
-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판시’에 대한 과장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음
 - ‘판시’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며, ‘판시’가 통하려면 사업주체의 경쟁력과 사업의 타당성과 합리성이 구비되어야 함. 이러한 요소들이 구비되었을 때 소위 ‘판시’가 작동할 수 있는 것임
- ‘판시’에 주로 의존한 사업은 실현되기도 어렵고, 실현되었다 하더라도 지속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음.

부록 I // **중국 국제환경협력 담당기관 연락처** ▶▶▶▶▶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주소
환경보호부 국제협력사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部 國際協力司)	http://gjs.mep.gov.cn/	+86-10-6655 6114 (환경보호부 대표번호)	北京市西城区西直门南小街115号
환경보호대외협력센터 (环境保护对外合作中心, FECCO)	http://www.mepfeco.org.cn/	+86-10-8226 8810	北京市西城区后英房胡同5号
중-아세안환경보호협력센터 (中国-东盟环境保护合作中心, China-AS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Center)	http://www.chinaaseanenv.org/sy2/index.shtml	+86-1082268 215	北京市西城区后英房胡同5号
중일우호환경보호센터 (환경발전센터) (中日友好环境保护中心; Sino-Japan Friendship Centre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http://www.edcmep.org.cn/	+82-10-8643 7722	北京市朝阳区育慧南路1号
중국환경과학연구원 (中国环境科学研究院, CARES)	http://www.craes.cn/cn/index.html	+86-10-8491 5193	北京市朝阳区安外北苑大羊坊8号
중국환경계획원 (中国环境规划院, CEAP)	http://www.caep.org.cn/index.asp	+86-10-8491 0863	北京朝阳区安外大羊坊8号 中国环境科学研究院院内2号楼南段三层
중국환경관측센터 (中国环境监测总站, CNEMC)	http://www.cnemc.cn/	+86-10-8494 3000	北京市朝阳区安外大羊坊8号 (乙)
중환연합인증센터 유한공사(중국환경인증센터) (中环联合(北京)认证中心有限公司 (国家环保总局环境认证中心), CEC)	http://www.sepacec.com/	+86-10-5920 5938 (종합부)	北京市朝阳区育慧南路1号
중국환경경제정책연구센터 (环境与经济政策研究中心, PRECC)	http://www.prcee.org/	+86-10-8466 5771	北京市朝阳区育慧南路1号
중국환경보호산업협회 (中国环境保护产业协会, CAEPI)	http://www.caepi.org.cn/	+86-10-5155 5166	北京市西城区扣钟北里甲4楼
고체폐기물 및 화학제품 관리기술센터 (固体废物与化学品管理技术中心, SCC)	http://www.mepsc.cn/tabid/40/Default.aspx	+86-10-8466 5471 (수입폐기물심사 관련부서)	北京市朝阳区育慧南路1号

1. 중국 환경관리 법규 및 제도

- 중국은 「환경보호법」을 환경관리 기본법으로 하고 「대기오염방지법」, 「수질오염방지법」 등 개별 환경 및 자원 관련법을 두고 있으며, 중앙 및 지방정부의 조례, 실시세칙 등 행정법규, 그리고 성급 정부의 환경 관련 규칙과 규정, 그 밖의 행정명령 등을 시행하고 있음
- 중국은 최근 주요 환경법규의 개정 및 제정을 통해 환경보호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과 기업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있음
 - 1979년 제정된 「환경보호법」이 1989년 1차례 개정된 이후 2014년 약 25년 만에 개정되었으며, 1987년 수립되고 1995년과 1999년에 각각 개정된 바 있는 「대기오염방지법」은 2015년에 개정됨
- 주요 법규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2013)」,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2015)」 등이 수립되어 중국 환경관리 강화 기초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앞으로의 5년을 이끌어갈 「국민사회경제발전 13차 5개년 계획」이 발표됨

가. 환경보호법

- 2014년 4월에 개정되어 이른바 「신환경보호법」이라 불리는 본 법은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이라 평가될 만큼, 정부, 기업, 민간의 환경오염 관리 및 대응 수준을 대폭 강화함
 - 본 법은 6개의 장과 1개 부칙, 7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 장은 각각

총칙, 감독관리, 환경보호와 개선, 오염과 기타 공해 방지, 정보공개, 대중 참여, 법률책임로 구성되어 있음

- 본 법의 개정을 통해 강화된 부분은 크게 다음 5가지 부분임
 - 1) 기본 입법이념이 '경제우선발전'에서 '생태문명 건설과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으로 전환됨
 - 2) 기업의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이 강화: 오염물질 불법 배출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일일 누진제 벌금부과 가능, 생산 제한, 생산 정지, 사업장 폐쇄 등)되었으며, 건설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영향평가제도가 의무화됨
 - 3) 정부의 환경오염 관리감독 책임 강화: 유관 부처간 환경모니터링 정보공유를 통해 환경모니터링 강화, 현급 정부에 오염물질 불법배출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권한 부여, 환경보호 목표책임제와 고과평가제도 시행을 통한 상급정부의 하급 정부 관리감독 강화
 - 4) 환경오염 및 관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와 대중참여 강화: 기업과 정부의 환경정보 공개 의무화,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민간의 고발조치 가능
 - 5) 기업의 돌발환경사고 관리 강화, 환경오염 책임보험 가입 장려 등
- 이와 같은 법규 강화에 따라, 법규 이행을 위한 하위 규범들이 대거 수립되고 있는 상황으로, 「환경보호법」 25조, 55조, 60조, 59조에 근거하여 「환경보호주관부서 압류압수 실시방법」, 「기업사업단위 환경정보공개방법」, 「환경보호주관부서 생산제한, 생산중지정돈 실시방법」, 「환경보호주관부서 일일연속처벌 실시방법」 등이 수립됨.

나. 대기오염방지법

- 2015년 8월 29일 개정된 본 법은 「신환경보호법」 개정 이후 단일법으로서 가장 먼저 개정되었으며, 부칙을 포함하여 총 8개 2장 129개 조항으로

구성됨.

- 개정 전의 「대기오염방지법」에 비해 조항의 수가 66개에서 129개로 증가하였으며, 중점지역 대기오염 공동방지와 심각한 오염 날씨 대응 관련 규정이 추가됨
- 본 법의 개정을 통해 변화된 부분은 크게 다음 5가지 부분임
 - 1) 대기질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음. 기존에는 대기오염방지에 있어서 대기오염물질 총량지표 규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 개정법에서는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함(제2조).
 - 2) 대기오염 방지 및 관리를 위한 지역간 협력을 강조하고, 지역간 통일된 계획, 통일된 기준으로 규제목표를 설정하여 공동으로 대기오염문제에 대응하도록 함(제86조).
 - 3) 대기오염 유발기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 본 법 전체 조문 129개 중 30개 조항이 법적 책임 조항으로 약 90여개의 처벌대상 행위를 규정함. 또한 대기오염사고 유발기업에 대해 기존의 벌금상한선(최고 50만 위안)을 폐지하고, 직접적 책임을 가진 기업에는 전년도 매출액의 50% 내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함.
 - 4) 심각한 대기오염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 및 예·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게 하였으며, 심각한 대기오염을 돌발환경사고 응급관리 범주에 포함시켜 관리하도록 함
 - 5) 이동오염원(자동차, 선박 등)의 관리 강화,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의무, 공장 먼지오염방지 강화, 대기오염피해평가제도 구축 요구 등의 내용이 포함됨.

다.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

- 2015년 4월 2일 발표된 본 계획은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10개 조항을 수록하여 이른바 ‘수십조(水十條)’ 계획으로 일컬어지고 짐

- 10개의 조항은 오염물질배출전면규제, 경제구조전환, 수자원 절약 및 보호, 과학적 기술지원 강화, 시장체제 기능 발휘, 법 집행 및 관리 감독, 물환경 관리 강화, 수생태 환경안전 보장, 명확한 책임제 실시, 대중참여와 사회감독 강화임
- 본 계획은 2020년까지 전국 수질의 단계적 개선, 오염이 심각한 수체 대폭 감축, 음용수 안전보장수준 제고, 지하수 과다 채수 엄격 규제, 지하수 오염 가속화 추이 규제, 근안 해역 환경질 양호한 상태 유지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밖에 2030년 까지의 장기 목표도 구체화하고 있음

〈표1〉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 세부 목표 지표

목표 연도	목표 지표
2020년	·장강, 황하, 주강, 송화강, 회하, 해하, 료하 등 7대 중점 유역 수질급수 3급 이상 비율 70% 이상 달성
	·지급 이상 도시 “냄새나는 검은 물” 지역 10% 이내로 규제
	·지급 이상 도시 집중식 음용수 수원 수질 3급 이상 비율 93% 이상 달성
	·전국 지하수 수질 차이 15% 이내로 규제
	·근안 해역 수질 1, 2급수 비율 70% 달성
	·징진지 지역 사용기능 상실(5급 미만) 수체 단면 비율 15%포인트 감축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지역 사용기능상실 수체 감축
2030년	·전국 7대 중점유역 수질 3급 이상 비율 75% 이상 달성
	·도시 “냄새나는 검은 물” 지역 ‘0’ 달성
	·도시 집중식 음용수 수원지 수질 3급 이상 비율 95% 달성

자료: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

- 이상의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 행동계획 내용은 1) 오염물질 배출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 2) 주요 수질오염원에 대한 중점 관리, 3) 부처간 협력 강화 등을 담고 있음
- 오염물질배출기업 관리강화: ‘홍(紅)·황(黃)패(牌)’ 제도를 실시를 통해 오염물

질 배출기업 영업 관리 및 명단 공개

- 주요 수질오염원에 대한 중점 관리: 10대 중점 업종에 대한 중점 관리방안 마련을 통한 규제
- 부처간 협력 강화: 수질오염방지 행동계획 매 조항마다 추진 부처와 참여부처를 명시하여 부처간 협력 강화

라.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 2013년 9월 발표한 본 계획은 2017년까지 전국 지급 이상 285개 도시의 PM₁₀ 농도를 2012년 대비 10% 이상 감축하고, ‘대기질 좋음(우수)’ 일수(日數)를 점진적으로 제고하고,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과 장강 및 주강삼각주 등 3대 대기오염 심각지역은 PM_{2.5} 농도를 2012년 대비 각각 25%, 20%, 15% 감축한다는 계획임
 - 이 중 베이징의 경우 PM_{2.5}의 연평균 농도를 60 $\mu\text{g}/\text{m}^3$ 수준으로 억제할 계획
- 본 계획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① 대기오염 종합관리역량 강화, ② 산업구조 고도화, ③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 ④ 오염물질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책임평가제 실시, ⑤ 과학기술 혁신력 제고, ⑥ 관련법규 정비 및 집행능력 강화 등이 제시됨
 - 대기오염 종합관리역량 강화: 제조업체의 대기오염 및 이동 오염원에 대한 규제 강화
 - 산업구조 고도화: 에너지 다소비, 오염물질 다배출 산업의 신규 증설 엄격 통제, 낙후된 생산시설 퇴출, 생산능력 과잉 업종의 규정위반 건설사업 진행 중지 등
 -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 석탄 소비 총량의 비중 65% 이하로 통제, 청정에너지의 대체이용 확대, 석탄의 청정이용 추진, 에너지 사용효율 제고 등

- 오염물질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책임평가제 실시: PM_{2.5} 모니터링 시스템 및 정보공개체계를 구축하고, 책임평가제 실시, 오염심각 경보체계 확립 등
 - 1) 2015년까지 지급 이상 도시 PM_{2.5} 모니터링 측정소와 국가 직영 측정소 확충, 매일 대기질 상위 10개 도시와 하위 10개 도시의 명단 공개
 - 2) 대기오염방지 목표달성 서약서 체결을 통해 국무원은 매년 초 각 성, 직할시, 자치구 정부의 전년도 대기오염 방지성과 평가를 진행하여 지방정부 지도자 및 간부들의 업무성과평가에 반영
 - 3) 오염심각일기(日氣) 모니터링 예·경보 시스템 구축(3대 오염심각지역은 2014년, 기타 지역은 2015년까지)
- 이 밖에 관련 기술개발 및 혁신능력 강화,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 평가 기준 제고,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환경경제 구현, 대기오염방지법 수정 등 관련 법제 정비, 지역 간 협력 메커니즘 구축, 정부와 기업, 국민의 환경보호 총력전 전개 추진 등의 내용 포함

마. 국민사회경제발전 13차 5개년 계획

- 13차 5개년 계획 기간(2016~2020)의 정책 목표와 발전 이념, 주요 과제 등을 제시한 「국민사회경제발전 13차 5개년 계획」에서는 향후 5년의 발전 이념과 주요 과제에 ‘녹색발전’을 명시하여 국민사회경제발전계획에 환경보호 내용이 전면에 등장함
 - 「계획」에서 향후 5년간 경제발전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발전 이념으로 ‘혁신’, ‘균형’, ‘녹색’, ‘개방’, ‘공동향유’가 제시됨
 - ‘녹색’은 중국의 지속가능발전의 필수 조건으로서,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기본 국책으로 견지해나가며 자원절약형·환경우호형 사회 건설을 가속화하고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촉진할 새로운 구조를 형성하며,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추진하도록 함

- 또한 「규획」은 “샤오강(小康) 사회” 건설을 위한 7개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 ‘생태환경질 총체적 개선’이 포함됨
 - 7개 목표는 중고속 경제성장 유지, 혁신(창조)발전성과 제시, 협조적 발전 강화, 인민의 생활 수준과 질의 보편적 제고, 국민소양과 사회문명 수준 제고, 생태환경질 총체적 개선, 제도의 성숙화 및 정형화임
 - 생태환경질 총체적 개선을 위한 조치로는 1) 생산방식과 생활방식의 녹색화, 저탄소 수준 제고, 2) 에너지 자원 개발 및 이용 효율 대폭 제고, 3) 에너지 및 수자원 소비·건설용지·탄소배출량 효율적 규제, 4)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5) 주체 기능지역 분포와 생태안전망 형성 등이 포함됨
- 제시된 구체적 목표 지표 중 자원환경 부분 목표지표는 모두 구속성을 갖는 지표로서, 경지보유량, 새로 증가되는 건설용지의 규모, GDP/만 위안당 용수 저감율, 단위 GDP 당 에너지 소비량 저감율, 비화석 에너지 소비 비중, 단위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율, 산림피복률, 대기질, 지표수질, 주요 오염물질 배출총량 등의 지표가 제시됨

〈표2〉 중국 13차 5개년 계획 자원환경 부문 주요 목표

지표		2015년	2020년	연평균 증감률	속성
(16) 경지보유량 (억 묘)		18.65	18.65	[0]	구속성
(17) 새로 증가하는 건설용지 규모(만 묘)		-	-	[<3256]	
(18) GDP/만 위안당 용수량 저감률		-	-	[23]	
(19) 단위 GDP당 에너지소비량 저감률		-	-	[15]	
(20) 1차 에너지 소비량 중 비화석에너지원의 비중(%)		12	15	[3]	
(21) 단위 GDP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율		-	-	[18]	
(22) 산림발전	산림피복률	21.66	23.04	[1.38]	
	산림축적량(억 m³)	151	165	[14]	
(23) 대기질	지급이상도시 대기질 우수 및 양호 일수 비율	76.7	>80	-	
	PM _{2.5} 지표미달* 지급 및 이상 도시 농도 저감율(%)	-	-	[18]	
(24) 지표수질	3급 수질 이상 수체비중(%)	66	>70	-	
	5급 미만 수체 비중(%)	9.7	<5	-	
(25) 주요 오염물질 배출총량 저감률	COD	-	-	[10]	
	암모니아 질소			[10]	
	아황산가스			[15]	
	질산화물			[15]	

- 이상의 구체적 지표 외에 「규획」 제10편 ‘생태환경개선가속화’에 환경분야 정책방향(7개)과 주요 추진 정책/조치, 그 밖의 관련 중점 사업이 제시됨
 - 환경분야 정책방향은 주체기능구역 건설가속화, 자원절약 집약이용 추진, 환경 종합관리역량강화, 생태환경 복원강화, 글로벌 기후변화 적극 대응, 생태안전 보장체제 구축, 녹색환경보호산업발전임
 - 각 정책방향별로 2~7개의 추진 정책/조치와 세부 내용들이 제시되었으며, 그 밖에 자원절약 및 집약, 순환이용 중대사업, 환경관리보호 중점사업, 산수림전 호(山水林田湖) 생태 사업의 추진 내용이 제시됨

1. 한중 환경협력 추진체계

- 우리나라 환경분야 대중국 정책과 사업의 개발은 대체적으로 중앙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이 주도하고 기업, NGO,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 환경분야 대중국 정책 담당 정부부처는 환경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 등이며 이 중에서도 환경부와 외교부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
 - 환경부는 국제협력부서와 매체별 사업부서에서 대중국 정책과 사업을 담당하는 체계를 갖고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 등 산하기관의 조사 및 연구결과, 유관 연구기관, 대학, 기업 및 전문가 컨설팅, 관련부처의 의견 등을 토대로 정책이 개발 및 수립되고 있음
 - 외교부는 산하기관 또는 대학 등을 통해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분야 전문 정책과 사업을 직접 개발하기 보다는 정상회담 환경이슈 의제화, 국제환경협약에서의 대중국 전략개발, 양자 및 다자간 환경협의체 등 대화채널을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 대중국 정책과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과 구축한 국제추진체계는 양국 정부간 협력체와 공공 또는 민간부분의 협력체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됨
 - 정부간 협력체는 양자간 협력체와 다자간 협력체로 대별되며, 양자간 협력체로는 한중 환공동동위원회가 대표적이고 다자간 협력체로는 한중일환경장관회의(TEMM),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동아시아산성비모니터링네트워크(EANET) 등이 있음

- 공공 또는 민간부문 협력체는 주로 양국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 기업 및 전문가/학술단체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한중일환경과학원장회의, 한중환경산업협력센터, 한중일환경라운드테이블, 환경자원학회네트워크 등이 있음

2. 정부간 협약 및 공동성명

- 우리나라는 1993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을 이후로 2016년 1월 현재까지 황사관측 및 정보공유, 철새보호, 따오기 증식·복원, 폐기물, 아생생물 및 자연생태계 보전, 기후변화, 판다보호, 대기질 및 황사 측정자료 공유에 대한 양자간 협력 협정을 체결함
- 특히, 2015년 10월 체결된 「환경 대기질 및 황사 측정자료 공유를 위한 합의서」에 근거하여, 서울 등 수도권 3개 지역 대기질 정보와 중국 35개 도시 실시간 대기질 측정자료 및 40개 지방도시 황사발생 측정자료를 공유하기로 하였으며 양국간 미세먼지 공동연구단 구성을 통해 미세먼지 원인 공동규명, 예보모델 개선 방안 등을 함께 연구하고 전문인력 교류도 병행하기로 함
- 정부간 협약 외에도 한중/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환경관련 협력사항을 합의하고 있음.
 - 최근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담(2015.11.01)에서는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3국 대기오염 정책대화를 통해 역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례를 공유하고 황사분야, 오염방지 및 통제 기술, 생물다양성 보전, 해양쓰레기 공동 모니터링 등에서 협력을 이행하기로 함

〈표1〉 한중 정부간 환경협력약정 체결 현황(2016년 1월 20일 현재)

체결일	체결자	협정 명칭	종료여부
1993.10.28	한승주 장관 (외교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	유효
2003.07.08	한명숙 장관	대한민국 환경부와 체결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부 간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종료
2005.06.07	곽결호 장관 (환경부)	한중 황사관측과 정보공유를 위한 양해각서	유효
2007.4.10	이규용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철새보호에 관한 협정	-
2008.8.25	이병욱 차관	중국 따오기 기증 및 한·중 따오기 증식·복원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유효
2012.08.30	유영숙 장관	한중 폐기물협력 양해각서	유효
2013.06.27	윤성규 장관	한·중 공동 따오기 보호 협력 양해각서	유효
2014.07.03	윤성규 장관	한·중 야생생물 및 자연생태계 보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유효
2014.07.03	윤성규 장관	한·중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유효
2015.01.29	최경환 장관	한중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정부간 협정	유효
2015.10.31	윤성규 장관	한중 판다 보호협력공동 추진 양해각서	유효
2015.10.31	윤성규 장관	대기질 및 황사 측정자료 공유합의서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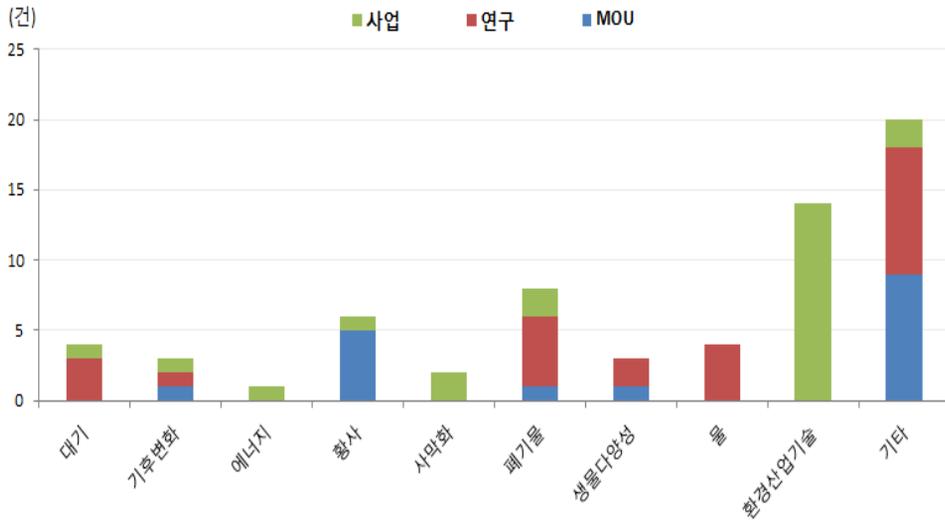
3. 협력사업 추진 현황

- 한중 환경협력은 양국 정상간 공동성명과 환경부 등 담당부처 협정을 바탕으로 관련 기관간 협력MOU 체결 등을 통해 협력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음
- 환경부 산하 및 관련 기관의 한중 환경협력 사업 추진현황을 조사한 결과, 1998년부터 최근(2016.2)까지 MOU, 공동연구, 협력사업을 포함한 총 65건의 협력활동을 수행했거나 수행 중에 있음

○ 분야별로는 대기/기후/에너지 분야에서 8건, 황사/사막화 분야에서 8건, 폐기물 분야에서 8건, 생물다양성 분야에서 3건, 물 분야에서 4건, 환경산업기술 분야에서 14건, 기타에서 20건이 각각 수행됨

○ 협력활동의 유형별로는 MOU 체결이 17건(26.1%), 공동연구가 24건(36.9%), 협력사업이 24건(36.9%) 수행됨

* MOU 체결 건수에는 연구 또는 사업 수행을 위해 체결한 MOU가 제외된 건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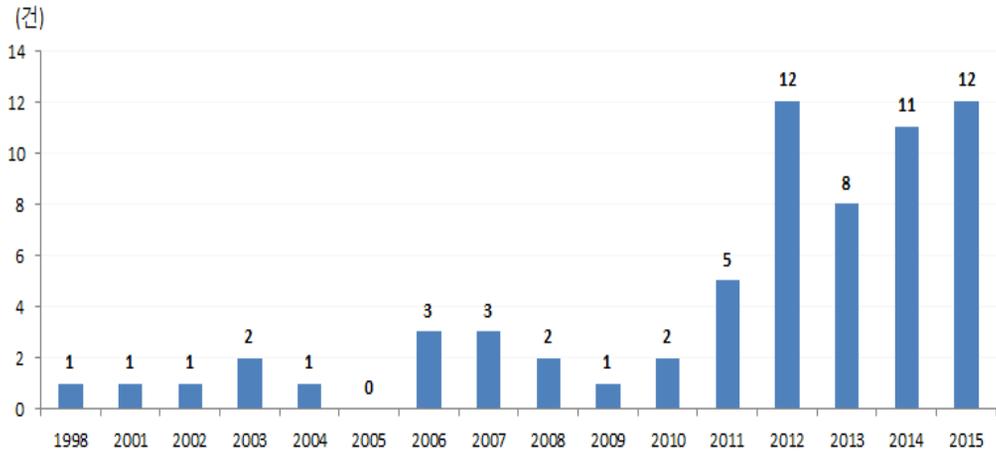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1〉 분야별 한중 환경협력 현황

○ 연도별로는 2000년 대 중·후반에 양국 협력활동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나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함.

- 1998년부터 2015년까지의 협력사업 65개 가운데 73.8%에 해당하는 48개 협력활동이 2011~2015년 사이에 집중 수행됨



주: 1) 협력 개시년도(MOU 체결일)을 기준으로 산출함
 2) 연구 또는 사업 수행을 위해 체결한 MOU 건수는 제외됨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 연도별 한중 환경협력 현황

3. 협력사업 추진 성과 및 한계

- 한중 환경협력활동의 성과는 1) 법적·제도적 기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2) 환경협력의 실질적 결과물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임
- 양국 정상간 공동성명과 양국 주무부처의 협정을 통하여 양국 환경협력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함
- 양국간 환경협력 수행기관관 포괄적 협력 MOU, 연구 및 사업 협력 MOU 체결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정상회의-환경부처 장관회의-협력기관(장)회의로 구성되는 3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함
- 양국 환경협력의 실질적 결과물로는 협력활동 실행조직위를 설치하였으며, 황사 및 대기분야 측정데이터를 공유하기로 한데 이어, 대기 등 분야에서 환경기술 실증사업 추진으로 중국에서 우리기술의 실증 인증서를 획득할 수 있게 됨

○ 반면 다음과 같은 양국간 환경협력 한계가 확인됨

- 공동성명-협정-협력 MOU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정상-담당부처-관련기관으로 구성되는 유기적인 이행체계 및 상호 협력체계가 미흡함
- 양적으로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협력활동이 집중되지 못하고 분야별 그리고 담당기관별로 분산되어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협력활동간 시너지 효과가 미미한 실정
- 한중 양국의 환경협력을 상징하고 대표할 만한 장기적인 협력 프로그램과 사업이 부재함
- 한중 환경협력의 분야별 및 담당기관별 사업을 조정할 있는 조직이 부재함
- 협력기관이 중국환경과학연구원 등 일부 중국의 연구기관에 집중되어 있어 협력활동의 상당부분이 현황에 대해 조사·분석하는 과학연구에 집중되어 있음
- 이로 인하여 상호 벤치마킹을 통한 자국의 환경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과 시스템 등 영역의 협력활동은 상대적으로 저조함
- 이와 함께 환경부 산하기관 또는 유관기관이 협력과정에서 예산부족, 협력정보 불확실성, 중국 정부의 협력의지 부족, 중국 정부의 규제와 절차상의 문제 등의 애로사항에 실제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